

호계온천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
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915번지일원 호계온천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의거 공람·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8. 14.

안 양 시 장

1. 공람기간 : 2024. 8. 14. ~ 2024. 8. 29. (15일)

2. 공람장소 : 안양시청 도시정비과(☎031-8045-5282)

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계획(변경)인가 관계서류

3. 공람내용 : 호계온천 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관계서류

- 주요변경내용 : 수영장 신설_ B2층: 기계실, B1층: 수영장(4-LANE, L=25m)

4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내용

가. 사업명칭 : 호계온천 주변지구 재개발사업

나. 시 행 자 : 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(조합장: 구준희)

다. 사업위치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15번지 일원

라.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

마. 사업계획(변경)

1) 대지면적 : $32,351.10\text{m}^2$ (변경없음)

2) 건축면적 : $6,305.8443\text{m}^2$ (당초 $6,314.2533\text{m}^2$ / 감 8.4090m^2)

3) 연 면 적 : $161,090.3453\text{m}^2$ (당초 $159,224.8945\text{m}^2$ / 증 $1,865.4508\text{m}^2$)

주민공동시설 면적 $7,087.3732\text{m}^2$ (당초 $5,148.2032\text{m}^2$ / 증 $1,939.1700\text{m}^2$)

근린생활시설 면적 805.3400m^2 (당초 879.0592m^2 / 감 73.7192m^2)

4) 밀 도 : 건폐율(19.49% /당초 19.52%) / 용적률(299.28% /당초 299.39%)

5) 규 모 : 아파트 10개동(지하 3층/지상 37층, 변경없음), 세대수 1,011세대(변경없음)

6)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복리시설

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공람에 대한 의견서

사 업 명	호계온천 주변지구 재개발사업			
의견제출인	성명 또는 명칭		연락처	
	주 소			
사업시행자	성명 또는 명칭	호계온천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		
	주 소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37번길 6 2층(호계동)		
의견내용				

2024년 월 일

의견제출인 : (인)